

서울특별시 경제산업 분야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25
------	------

2016. 9. 1.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6년 8월 16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16.9.1)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의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경제산업분야 출연기관에 대한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경제산업분야 출연기관으로는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디지털재단이 있음.
- 경제산업분야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을 통해 서울산업진흥원의 전략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서울시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확보 어려움 해소, 서울디지털재단의 첨단 디지털기술을 접목한 도시문제 해결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Ⅲ.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¹⁾에 따라 서울시가 2017회계연도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해 미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나. 출자·출연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의무화

- 정부는 2014년 5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의무화 하도록 하였음.
- 이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지난 10월 20일 2016회계연도 출자·출연금 편성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함.
- 이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이 보조금과 달리 예산 집행 후 사후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는 사정을 고려해 출자·

1)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출연에 대한 지원절차를 강화하고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이에 따라 경제진흥본부는 경제산업분야의 출연기관으로 운영 중인 서울산업진흥원과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서울디지털재단의 출연여부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였음.

다. 경제산업 분야 출연의 적정성

- 경제진흥본부는 서울시의 산업, 민생, 일자리 등 경제전반에 대한 정책과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로 산하에 출연기관들을 두고 있으며, 매년 출연금을 편성·지원하고 있음.
- 경제진흥본부 산하의 출연기관은 현재 서울산업진흥원과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리고 서울디지털재단 3곳이 있음.

<출연기관의 출연금 편성 가안>

(단위 : 억원)

구 분	2017년	2016년	증감	증감사유
서울 산업진흥원	569	569	-	서울산업진흥원 총 소요예산 중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고 부족분에 대하여 출연
서울 신용보증재단	100	190	△90	햇살론 출연 종료 (16년의 경우 햇살론 관련 서울시 출연금 분담액 163.5억원 편성되었음)
서울 디지털재단	52.2	16.8	35.4	재단고유사업 확대 및 인원 확충(8명→13명)

- 서울산업진흥원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

한 법률」 제49조와 「서울산업진흥원 설립운영조례」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중소기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서울형 전략 산업을 육성하여 서울시 산업의 진흥과 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며,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있음.
- 서울디지털재단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며, 디지털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담당하고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디지털 서울 구현과 지속가능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서울산업진흥원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오랜 기간 동안 서울시의 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여 왔으며 업무의 성격이 경제진흥본부의 역할을 보완하고 기능적으로 상승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성을 인정할 수 있음.
- 서울디지털재단은 금년 6월에 설립되어 아직 창립기이지만 점차적으로 고유사업을 확대하여 서울시의 디지털 산업에 대

한 중장기발전전략을 제시하고 디지털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 종합의견

-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산업진흥원의 경우 현재까지의 서울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부분과 향후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고 두 기관이 출연금이 없으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곤란하게 된다는 점에서 출연 동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한편, 디지털 재단의 경우 현재 수탁업무인 ‘개포 디지털혁신파크의 운영’을 포함하여도 수행 중인 사업이 적어 고유 사업의 확대가 필요함. 따라서 이에 따른 인원과 조직의 확충이 필요하나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재단의 사업목적과 방향에 부합하도록 주의가 요구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경제산업 분야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1325
----------	------

제출년월일 : 2016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에서는 산업진흥, 중소기업의 육성, 지역 소상공인 지원, 디지털산업의 지원 등 다양하고 특화된 행정수요에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제산업분야에서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디지털재단을 운영하고 있음
- 나. 이에 경제산업 분야 출연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7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제산업 분야 출자·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자·출연 개요

- 대상기관 :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디지털재단
- 관련법령
 - (공통)법령 : 민법(제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개별)법령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조 레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주요 사업

- 서울산업진흥원
 - 서울형 전략산업 육성, 중소기업 판로지원, 창업활성화, 해외 통상 및 투자유치 지원
- 서울신용보증재단
 -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및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종합지원사업
- 서울디지털재단
 -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연구 및 컨설팅, 개포 디지털혁신파크 운영 등 디지털 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다. 출자·출연의 필요성

-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체계적·종합적 육성, 신용보증 지원, 디지털 산업 분야 지원을 통한 서울경제 활성화
 - 서울시 산업 및 중소기업 육성 전문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에 대한 출연으로 서울의 전략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고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첨단디지털 기술 접목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디지털 서울 구현과 디지털 산업지원을 위한 서울경제 활성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 서울특별시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2조(출연금 등) ① 시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기금 및 출연금 등) ①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17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경제정책과 경제정책팀 최나현 (☎ 2133-5221)